졸업논문시행규정(3-5-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1조 및 동 시행세칙 제74조의 2 제6항에 규정된 학사학위 수여요건인 졸업논문의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6)

제2조(졸업논문 제출자격) 본 대학교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졸업기준(취득학점, 등록회수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단, 외국인 유학생은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07. 3. 22)

제3조(졸업논문의 구분) 졸업논문은 예·체능계 학부(과)는 실기 및 작품발표, 기타 학부(과)는 논문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의 방법으로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학부(과)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실험실습보고 또는 졸업종합시험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졸업논문의 선정) 각 학부(과)에서 실시할 졸업논문의 종류, 양식, 실시 시기는 매 학년 초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결정 공고한다.

제2장 졸업논문 관리위원회

제5조(졸업논문 관리위원회의 설치) 졸업논문의 실시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졸업논문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04. 8. 11)

제6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교무처장, 각 학부(과)장, 학사관리팀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논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논문의 평가 및 합격사정에 관한 사항
3. 시험 교과목 출제의 범위와 방법 및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4. 실기 및 작품발표 종목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
5. 실험실습보고서의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
6. 기타 졸업논문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졸업논문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장 졸업논문

제10조(제출시기) ① 논문제출자는 논문작성 계획서를 4월 말(후기졸업 예정자는 전년도 10월 말)까지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의 논문제출자격이 인정된 자는 지정된 규격 및 양식 등에 맞추어 10월 말(후기졸업 예정자는 5월 말)까지 지도교수를 경유 소속 학부(과)장에게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논문지도교수) ① 졸업논문 지도교수는 5월 말(후기졸업 예정자는 전년도 11월 말)까지 소속학부(과) 전임교원 중에서 학부(과)장의 내신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졸업논문 지도교수는 논문작성의 전 과정을 지도하여야 하며, 논문은 개인연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보고의 공동연구는 3인 이내에 한하여 해당학부(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심사 및 평가기준) ① 제출된 논문의 심사 및 평가기준은 학부(과) 교수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② 논문의 심사는 논문 지도교수를 포함한 해당학부(과)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실시하며, 합격·불합격의 여부만을 심사한다.

③ 심사위원은 각 학부(과)장의 내신에 의거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13조(합격자 결정) ① 논문은 제출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합격·불합격을 판정한다.

② 논문의 합격은 심사위원의 과반수의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 각 학부(과)장은 논문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합격자 결정 후 7일 이내에 졸업논문 시행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논문의 보존) 제출된 논문은 각 학부(과)에 보존한다. 다만, 우수한 논문은 중앙도서관에 비치할 수 있다.

제16조(경비부담) 졸업논문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실기발표 및 실험실습보고

제17조(시기 및 방법) 예·체능학부(과)의 실기 및 작품발표, 기타 학과(부)의 실험실습보고를 과하는 학생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졸업종합시험

제18조(시기) 졸업종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11월 중(후기졸업 예정자는 5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기는 매 실시 1개월 이전에 공고한다.

제19조(실시교과) ① 시험은 5개 교과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교과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교과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시험의 교과 및 과목은 각 학부(과) 교수회에서 선정하여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재20조(출제위원의 임명) ① 출제위원은 시험 실시 2개월 이전에 각 교과별로 학부(과)장이 내신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출제위원은 시험 실시 15일 이전에 시험문제를 교무처에 제출한다.

제21조(실시방법) ① 시험의 감독위원 및 채점위원은 각 학부(과)장의 내신에 의거 총장이 임명한다.

② 기타 시험에 관한 제반 업무는 졸업논문 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제22조(평가) ① 합격의 기준은 전 교과 평균 60점 이상으로 하고, 매 교과별 40점 이상으로 한다.

② 각 학부(과)장은 시험실시후 1주일 이내에 개인별 합격·불합격 여부(교과별 과락이 있을 경우에는 교과명을 명시)를 교무처에 제출한다.

③ 전 교과 평균은 60점 이상이되 교과별 과락이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해당 교과의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6장 기　　타

제23조(합격자 공고 및 학적부 기재) 교무처는 졸업논문의 합격 여부를 공고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제23조의 1(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

논문 및 졸업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96. 11. 6)

1. 재학 중 전공과 관련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자.
2. 재학 중 전공과 관련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자.
3. 재학 중 전공과 관련하여 권위 있는 문예지 등단(언론사 신춘문예 포함), 전국 규모의 예·체능계 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실적이 있는 자.
4. 재학 중 전공과 관련하여 국내외 유수 기업 등에서 시행하는 대학(원)생 논문대회에서 입상한 자.
5. 공인 외국어시험 일정 성적 이상인 자.
6. 해외현장학기를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신설 '09. 7. 1)

② 위 제1항 각호의 적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소속학부(과)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후 시행하며, 그 결과를 개인별 학적부에 기재한다.(개정 '97. 9. 3)

제24조(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